

濟州島의 一人家族 研究

金 惠 淑

目 次

- | | |
|------------------|--------------|
| I. 序 論 | IV. 一人家族의 分析 |
| II. 調査對象地 및 研究方法 | V. 結 論 |
| III. 家族類型 | |

I. 序 論

筆者는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하여 調査研究한 바 있다. 이 때에 媼母와 子婦가 대부분은 別居 형태였으며, 동일울타리내의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에서 생활하는 狀況에서조차 炊事 共同 보다는 炊事分離 가족이 더 많음이 나타났다. 심지어 한 지붕 아래서 생활하면서도 炊事分離의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意識面에 있어서 長男이라도 결혼직후 分家시키겠다는 입장이 시모·자부 모두 상당히 높음을 살핀 바 있다.¹⁾ 分家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은 의외로 一人家族이 상당히 많은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을 分析해 봄으로써 濟州島(이하 本島라 함) 家族의 特性을 밝히는 데 좀더 寄與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本島의 一人家族에 대하여는 동부지역의 S부락을 대상으로 家族의 現實的 類型을 考察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바 있다.²⁾ 이 연구에서 一人家族의 비율은 9.5%인데 모두 年老한 여성들로서, 16事例의 생활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本人의 姑婦關係를 위한 調査 과정중에서는 一人家族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다.

本島의 家族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試圖되고 있으나 一人家族에 대한 것은 上記 研究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1) 金惠淑,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 「논문집」 제17집, 제주대학교, 1984.

2) 崔在錫,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pp. 43~92.

本考에서 論議하고자 하는 一人家族이란 配偶者 및 直系親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단독의 家族을 의미한다. 그러나 家口속에 家政婦(食母), 雇傭人(머슴) 등의 非血緣 家口員이 同居하는 경우는 一人家族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家族員으로 理解되기 보다는 家口員으로서의 위치만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家口員이란 家族과는 달리 血緣이나 心理的 關係보다 끼니를 함께하는, 단순한 住居單位로서의 성격만을 뜻한다. 이런 경우에 一人家族과 一人家口는 一致하지 않는다. 즉, 一人家族속에 非血緣 家口員이 포함될 때는 家族員보다 家口員의 수가 많아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II. 調查對象地 및 研究方法

序論에서 밝힌 바와 같이 一人家族에 대한 理解를 얻을 수 있는 崔在錫의 조사대상지는 동부지역이므로 이와는 반대로 서부지역인 北濟州郡 H부락을 택했다. 그 이유는 調査者가 본 부락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家族生活 연구를 위한 事例調査는 대상지역 및 그곳의 住民들에 대해 다소나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생활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原理를 發見하는 일이 容易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地域的인 差異를 고려한 것이기도 한데, 이 한편의 研究로 本島 家族의 地域的인 차이점이 밝혀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꾸준히 이러한 作業을 試圖해 나가는 과정에서 本島內에서의 地域的인 比較研究도 가능할 것이라는 意圖에서였다. 이러한 노력의 蓄積이 지역의 偏重을 극복하고 本島 全體的인 家族 및 親族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나아가 他 島嶼地方이나 魚村 또는 陸地 傳統家族과의 比較研究도 가능해 지리라 본다.

濟州市를 중심으로 H부락은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일주도로 변에서 약 1.2km 한라산 쪽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 自然部落이다. 主農이면서 비교적 특용작물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다. 경제수준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勞動 위주의 經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本 研究를 위한 본격적인 調査는 1984년 7~8월에 주로 행해졌다. 그러나 分析過程에서 미흡한 사항은 그 이후에도 수차의 면접을 시행했으므로 本考를 作成하고 있는 '85년 2월까지 조사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調査에는 거의 1년여 기간이 소요되었다.

일차로 H부락의 총 가족수를 살핀 후에, 本考에서 다루고자 하는 一人家族으로 판단된 60事例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조사당시 단독의 家口를 形成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군입대 또는 학업 등으로 인한 잠정적 別居로서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再結合하게 될 家族은 面接對象에서 제외되었다.

調査方法은 一人家口를 1회 또는 수회 만나 개별적인 직접면접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기본사항들을 파악한 후에도 필요시 만나 여러 차례 面接을 했는데, 고령이어서 귀가 멀어 말뜻을 잘 알아 듣지 못한다든가, 結婚經歷을 밝히기 꺼려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도 있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본 부락에 居住하고 있는 보조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Ⅲ. 家族類型

一人家族의 分布를 살피기 위해 우선 이 部落內 家族의 現實的 類型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家族의 유형을 調査하는데는 먼저 家族範圍가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家族의 範圍나 形態 分類는 研究者의 視覺에 따라 다양하다. 家族을「결혼·혈연 또는 이 양자에 의해 그리고 여기에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하는 친척, 입양,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자들로 구성된 경제적·사회적 공동체 집단」이라는 기초적이고 廣範圍한 통상의 定義로는 家族類型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困惑스러워 지게 된다. 더구나 陸地部의 傳統家族과 여러 측면에서 相異한 本島 家族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本島 家族의 現實的 類型에 대한 先行研究³⁾는 研究者에 따라서 하나의 家族을 보는 단위 기준이 一致하지 않고 있다. 즉, 居住單位로 조사하기도 했고, 經濟(특히 炊事)를 중심으로 하여 考察하기도 하였다. 本島 家族의 경우 한 울타리내의 안·밖거리에서 父家族과 子家族이 생활하면서 炊事를 分離할 때 居住를 單位로 본다면 1家族이 되는 것이고, 經濟를 중심으로 파악하면 2家族이 된다. 따라서 家族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따라 結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동일울타리내 일지라도 部落社會에서는 居住를 中心으로 하여 家族單位를 意識하고 있다. 이는 附加戶 制度의 실시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정지(부엌)와 고방(庫房)을 분리 하고 있다는 것은 意識面이나 情緒關係에 있어서는 하나의 家族이라는 紐帶感이 형성되더라도, 經濟單位가 다르기 때문에 실생활에 있어서는 분명히 두 개의 家族으로서 機能을 하고 있는 것이다.

本島 家族의 이와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本考에서는 經濟單位(共同炊事 與否)를 기준으로 H부락의 家族形態를 파악했다. 이 문제를 李光奎도 “居住와 經濟의 두 조건에서 經濟生活이 더 중요한 意味를 갖기 때문”⁴⁾에 經濟單位로 家族을 規定하는 것이 本島 家族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經濟單位로 家族類型을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 3) 泉靖一, 「濟州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玄容駿, “海村生活의 調査研究(一)”, 「논문집」 제2집, 濟州大學校, 1976.
 濟州大學國文科, “社會背景”, 「國文學報」 4, 1972.
 _____, “家族”, 「國文學報」 5, 1973.
 _____, “家族, 家屋”, 「國文學報」 6, 1974.
 佐藤信行, “濟州島의 家族”, 「韓國農村의 家族と祭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3.
 玄容駿, “社會”, 「濟州島 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1973.
 李光奎,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濟州道篇), 文化公報部, 1974.
 崔在錫, 前掲書.
- 4) 李光奎, “社會學的 側面”, <특집> 濟州研究의 現況과 展望, 「耽羅文化」 제3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p. 63.

〈표 1〉 가족 유형⁵⁾

	본인조사	동부S부락	전국郡部	전국市部	서울
1인 가족	34.1(60)	9.5	4.1	8.0	9.8
부부 가족	56.2(99)	76.8	67.4	74.3	75.9
직계 가족	7.4(13)	13.7	27.8	14.2	9.5
방계 가족	2.3(4)	—	0.5	0.3	0.3
과도적가족	—	—	0.2	3.3	4.4
세	100.0(176)	100.0(168)	100.0	100.1	99.9

비고: ①본인조사의 방계가족은 여가주주+시조가 1명(1사례), 여가주주+친정모(2사례), 장모포함 가족(1사례)임.

②전국군부, 전국시부, 서울은 1975년 현재의 자료이며, 과도적 가족이던 형제나 오누이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③괄호안은 實數임.

위 표에서 H부락의 一人家族 비율이 놀라운 수치로 나타나 있다. 동부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여타 地域과도 比較도 되지 않는다.

夫婦家族은 낮는데, 이것은 直系家族 비율이 낮고 一人家族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核家族 경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60代 이상의老人们만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一人家族이 12.7%, 老夫婦만의 家族 41.2%로서 53.9%의 노인이 자녀와 別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 韓昌榮도 島內 老人의 53.9%가 別居하고 있음⁷⁾을 調査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동부지역 조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傍系家族이 보이고 있으며 더우기 이들중 3사례는 父系傍系가 아닌 것이 특이하다.

실질적인 一人家族 비율이 이렇게 높은 데에는 調査者 자신도 의외로서, 家族 범위의 지나친 제한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居住를 單位로 파악했을 때는 어떠한 것인가?

炊事を 분리하여 一人家族을 形成하고 있는 60事例중 동일울타리내에 居住하는 경우는 10사례 뿐이고, 나머지 50家族은 子家族과 同一部落, 他部落 등에서 떨어져 살고 있었다. 이와같이 居住單位로는 50家族(28.4%)이, 經濟로는 60사례가 一人家族을 이루고 있어 양 측면 모두 상당히 높은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상으로 볼 때도 이처럼 높다는 것은 經濟單位로 家族類型을 파악한 데에 무리가 없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더우기 研究方法에서 밝힌 바와같이 調査當時 一人家口의 形態이더라도, 別居중의 家族員이 다시 合家하게 될 가족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單獨家口는 이보다 더 많

5) 崔在錫, 前揭書, p. 51.

崔在錫, 「現代家族研究」, 一志社, 1982, p. 22.

6) 金兌玄, 「濟州島의 老人生活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8-1, 1980, pp. 100~101.

7) 韓昌榮, 「濟州島 老人論攷」, 韓一文化社, 1978, p. 118.

이 존재하고 있다.

一人家族의 分布가 H부락과 같이 많은 것이 本島의 전반적 현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老人들이 長壽하는 편⁸⁾이며, 차·삼남은 물론 長男도 結婚과 더불어 分家하는 核家族의 傳統⁹⁾, 經濟的·精神的 自立性, 부락내의 附加戶 制度의 혜택 등을 염두에 둔다면, 本島의 一人家族이 他地方에 비해 많을 것은 당연한 추세라 생각된다.

그러면 본 조사대상 지역의 一人家族 構成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一人家族 속에 家口主 이외에 非血緣 家口員이 포함된 사례가 全無하여 모두 單獨家口를 이루고 있다. 즉, 一人家族과 一人家口의 一致 현상은 S부락과도 동일하다. 陸地部 都市 및 農村의 경우는 一人家族 속에 非血緣 家口員이 포함된 사례도 있는데 本島의 경우 동부와 서부의 1부락씩이기는 하나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本島 農村 家族의 한 特性으로 여겨진다. 土地가 비옥하지 않아 集約農業에 적합치 못하여 밭농사를 지어왔고, 따라서 대규모의 家族形態를 출현시키지도, 머슴이나 고용인을 두지도 못했다. 또한 가능한 한 자신의 손으로 무엇이든 解決하려는 勤勉意識의 반영 등 여러 要素들의 作用으로 보인다.

IV. 一人家族의 分析

一人家族 生活의 특징을 잘 뒷받침해 줄 몇몇 代表的인 事例를 소개한 후 전체적인 성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사례 A >

80세인 A씨는 15세에 結婚했는데, 60여년 동안 함께 살아온 婦人是 4年前에 노환으로 사망했다. 지체부자유자인 큰아들은 함께 生活하다 母親 사망후 광평에 살고 있는 둘째아들이 보살피기로 약속하고 데려갔다. 세째아들은 같은 부락내의 다른 집에 居住한다. 네째아들은 現在 안거리에, 本人은 동일울타리내의 밖거리에 居住하고 있다. 막내는 戰死했고, 딸은 제주시에 있다.

A씨 자신의 소유 재산은 전려없고, 전사한 막내의 遺家族으로서 年金을 받아 生活을 꾸려 나간다. 안거리의 아들이 生日·어버이날에 음식을 차려주고, 그 子婦가 가끔 빨래를 도와주나 용돈·선물 등은 없으며, 식사는 本人이 직접 해결한다. 자식들이 炊事를 같이 하자는 提議도 있었지만, 계속 혼자 살기를 고집하고 있다. 자식들은 중요한 문제가 發生해도 議論을 해오지 않아 A씨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별로 존경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느끼고 있다.

주로 친구들과 담소하며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다. 신경통으로 괴로우나,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불구인 큰아들이 잘 지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8) 石宙明, 「濟州島의 生命調査書」, 서울신문사, 1949, p. 188.

9) 崔在錫 (1979), 前揭書, p. 29.

< 사례 B >

88세의 B할머니는 15세에 結婚, 1男2女를 낳았다. 딸 하나는 몇년전에 사망했고, 나머지 자녀는 제주시에 居住한다. 男便은 8年前 노환으로 死別했다. 그후 당분간 혼자 지내다가 약 3년 정도 아들집에서 同居한 적도 있다. 근래에 다시 本部落에서 혼자 居住하고 있다. 이웃들은 B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면 그 아들이 아프게 된다는 무당의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본인은 부락에 있는 집을 비워 두기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아들네 집에 가면 심심하고 갑갑해서라 한다.

자신의 소유 재산은 집 한채 뿐이다. 아들이 모든 生活費를 부담하며, 며느리와 손자들이 자주 왕래하여 보살핀다. 주로 집안에서만 지내고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앞으로 몸이 더욱 쇠해져 炊事가 힘들면 아들의 扶養을 받게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혼자 살아갈 意向이다. 附加戶 制度는 이무비·부역 모두 혜택받는다.

< 사례 C >

C할머니는 67세로서 19세에 結婚했다. 딸 하나를 낳은 채 男便은 해방과 더불어 일본으로 돈벌이 나간 몇년 뒤,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얻어 4男2女를 낳았다. 작년 그곳에서 사망했는데, 男便의 사망전까지는 후처의 자녀들에게서도 소식이 있었으나 근래에는 전혀 없다.

자신의 소생인 딸이 19년전 결혼하여 같은 부락내에 살며 자주 왕래한다. 용돈·선물·의논도 해오며 精神的 依支가 된다. 그 딸 하나를 위해 여생을 살아오고 있으므로 사위한테서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다.

소유 재산은 초가 안·밭거리와 600평 정도의 밭이 있어 自耕한다.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아갈 생각이다. 부가호 제도의 혜택은 전혀 없다.

< 사례 D >

D할머니는 86세이다. 16세에 첫 결혼을 했으나 子女없이 死別했고, 두 번째는 合議하에 헤어져서 세 번째로 喪妻한 남자의 再娶로 들어갔다. 그러나 入籍은 初婚時의 媳家에 되어 있는 채 지속되고 있다. 세 번째 男便은 25년전 사망했고, 그와의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제주시에 居住하며 D할머니의 식량을 공급한다. 사망한 前妻의 자식으로는 2男1女가 있는데 큰아들은 양로원, 막내아들은 사망했다. 사망한 아들의 슬하에 두 兄弟가 있는데 그중 막내(D할머니의 손자)가 동일울타리내의 안거리에, D할머니는 밖거리에서 살고 있다. 안거리의 손자가 빨감·식량을 가끔 마련해 주나 빨래나 식사는 완전히 스스로 해결한다.

소유 재산은 없으며, 움직일 수 있는 한 독립할 생각이다. 더 늙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市內의 친딸이 모셔 가기로 合議되어 있다. 死後에는 本媳家에서 入養한 養子가 「상」을 가져가고, 忌祭祀를 지내게 될 것이라 한다.

〈 사례 E 〉

74세의 E할머니는 17세에 結婚했으나 男便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 살림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본에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헤어지게 됐다. 일본에서 32세에 두 번째 男便을 만났는데, 이미 婦人과 두 아들이 있었다. E할머니와의 사이에서는 1男1女를 낳았는데, 귀국후 男便은 本島의 4·3사건 당시 사망했다. 전혀 소생의 자식들과는 전혀 紐帶가 없고, 서울에 사는 친 딸에게서는 전화연락 정도 뿐이다. 제주시에 居住하는 친아들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왕래하고, 經濟的·精神的 도움이 전혀 없다.

소유 재산은 집 1채와, 550평의 밭이 있어 自耕한다. 부역은 면제되나 이무비는 부담하고 있다.

〈 사례 F 〉

F할머니는 82세인데, 19세에 혼인하여 딸만 하나를 낳고 자식이 더 없었다. 男便이 아들을 얻기 위해 妾을 얻어 1男3女를 낳았으나, 20년전 사망시까지 F할머니와 생활했고 후처에게는 가끔씩만 내왕 했었다. 후처는 같은 부락내에 居住하며, 서로의 사이는 원만하다.

친딸은 같은 부락에 사나 워낙 바빠 자주 왕래하지 않고, 후처의 딸들은 거의 얼굴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들도 같은 부락에 居住하는데 그 며느리나 손자들은 가끔 들르나 아들이 직접 來往하는 일은 드물다.

재산은 1300평 정도의 밭과 초가집이 있다. 밭은 얼마전까지는 전부 自耕하였으나, 근래에 1000평은 아들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힘에 알맞는 200명만 耕作하여 生活을 꾸려 나가고, 자녀들에게서 경제원조는 전혀 받지 않는다. 아들이 生母가 아닌 관계로 이토록 무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혼자 살겠고, 부가호 제도의 혜택은 모두 받고 있다.

1. 性別

60家族 중 5사례만이 남자가구주이다. 男性은 婦人과 死別 또는 離婚했을 때 再婚하는 경향이거나, 年老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子家族과 同居하는 形態도 나타난다. 이것은 炊事와 같은 役割을 담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作用하는 것 같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비교적 장수하는 편이며, 55名の 여자가구주 중 本島의 4·3事件시 남편을 死別한 경우가 16사례나 되어 50代 이상에서 이 事件의 영향도 크다. 또한, 강인한 생활력, 나이드 후에 男子에게 예속되어 심부름이나 하지 않겠다는 意識 등도 作用하는 것 같다. 이러한 自主性은 자식들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는 현상을 낳아 一人家族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S부락의 경우 남성은 전혀 없었는데¹⁰⁾ 전국 조사에서는 여자가구주가 63.4%, 서울에 있어서

10) 上揭論文, p. 64.

1975년도에는 오히려 남자가구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¹¹⁾, 本島와는 다른 양상들이다.

본 조사 대상부락의 一人男子家口主 5사례를 살펴보면 자식의 연령이 어리고 경제능력이 미약하여 扶養치 못하는 1사례를 제외하고는, 자식들이 동일부락내에 居住하나 獨立하여 생활하고 있다. 특히 앞 사례 A씨와 같이 동일 울타리내의 子家族의 同居提議도 거절하고 밖거리에서 직접 炊事를 해결하고 있다. 거동이 가능한 한 獨立生活을 영위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구속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本人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意志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趙惠貞은 “노부모의 경우, 거의 노동을 못하게 될 때까지 독립하여 산다. 남편이 먼저 죽을 경우 여자는 대개 혼자 산다. ……부인이 먼저 죽을 경우 남자는 예외없이 큰아들 집에 가서 함께 살게 된다”¹²⁾고 했다. 父의 生存與否에 관계없이 母의 노동력이 있는 한 거의가 子世代에 의존하지 않는 점은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老父만 있을 경우는 一致하지 않고 있다. 물론, 趙惠貞의 경우, 해녀사회 연구를 위해 택해진 조사대상지가 “제주도의 전형적인 마을이 아님”¹³⁾을 밝히고 있으나, 「예외없이 큰아들 집에가서…」(加點一引用者)라는 점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H부락에서 동일 울타리내의 炊事分離 10사례 중 長男家族은 3사례에 불과하다. 이들 一人家族들이 자식 소유의 밖거리에서 생활하는 입장이 아니라, 法的 相續 절차 이후에도 가족의 규모가 큰 子家族에 안거리를 비워주고 밖거리로 옮겨간 것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 밖거리에서 홀로 炊事를 하다가 더욱 노쇠하여 炊事獨立이 어려워지면 長男이든 아니든 안거리의 자식이 돌보게 된다. 병이 위중해지면 안거리의 자식이 長男이 아닐 경우 長男이 모셔가든가, 아니면 사망 후 葬禮를 치르고 난 다음 「상」을 옮겨간다. 미처 長男의 집으로 모시지 못한 채 사망하면 「상」을 옮겨 다니는 것이 후손들에게 좋지 못하다는 習俗이 있어 대부분은 臨終을 맞은 집에서 葬禮, 朔祭(朔望祭) 및 小祥(과거에는 大祥까지 3年祥)을 치르고 난 후 忌祭祀는 長男이 책임을 지는 경향이 많다.

父母에 대한 扶養 책임에 있어 장남 우선 意識이 作用하나 반드시 長男 原則은 아니며, 아들이 있음에도 딸과 더 밀접한 生活關係가 形成되기도 한다. 金兌玄도 “老夫婦가 獨立해서 居住하다가 아주 노쇠하여 노동력이 없어 子女와 合家할 때 반드시 長男이어야 한다기 보다는 능력있는 子女가 모시는”¹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 年齡

연령분포를 보면, 50세 미만은 전혀 없고 70~80대가 주가 되어 평균연령이 71.8세이다. 양 부락의 差異點은 S부락에는 30代, 40代가 각각 1사례씩 있고, 80代는 전혀 없다. 전국 조사에서는 반대

11) 崔在錫(1982), 前揭書, p. 32.

12) 趙惠貞,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p. 156.

13) 上揭論文, p. 146.

14) 金兌玄, 前揭論文, p. 101.

〈 표 2 〉 연 령

	H 부 락	S 부 락 ¹⁵⁾
30 - 39	—	1
40 - 49	—	1
50 - 59	6(10.0)	4
60 - 69	8(13.3)	5
70 - 79	24(40.0)	5
80 ⁺	22(36.7)	—
계	60(100.0)	16

현상으로서 20代가 가장 많고, 서울지역은 60代 이상이 없었다.¹⁶⁾ 서울의 이런 현상은 남자가구주자 많은 점과 같은 脈絡으로 理解될 수 있다.

최고령자는 88세로 2사례인데, B의 경우와 같이 거동이 힘들어 겨우 炊事를 해결하면서도 자식의 扶養을 거절하고 있다. E·F의 例에서 고령임에도 自耕을 하는 것도 本島의 老人들이 강인함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主·自立성은 때로는 子世代를 당황케 만든다. 어떤 老母의 자식은 혼자 지내다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망 혹은 화재라도 당할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했다. 그래서 老母에게 同居를 권유해도 막무가내로 거절하는 강한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육지 전통가족과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현상으로 육지부의 사람들은 理解할 수 없는 本島 家族의 特性으로 파악된다.

3. 一人家族 形成의 배경

一人家族이 形成된 理由는 配偶者 사망과 자식이 獨立해 나간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양 부락이 같은 현상이다.

〈 표 3 〉 혼자 생활하게 된 이유

	H 부 락	S 부 락 ¹⁷⁾
배우자사망	54 (90.0)	14
이 혼	3 (5.0)	2
별 거	3 (5.0)	—
계	60 (100.0)	16

15) 崔在錫(1979), 前掲書, p. 64.

16) 崔在錫(1982), 前掲書, p. 34.

17) 崔在錫(1979), 前掲書, p. 64.

離婚後 계속 혼자 지내는 예는 적는데 崔在錫이 “死別女와는 달리 離婚을 하는 대부분의 여자는 再婚”¹⁸⁾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와 同軌로 理解된다. S부락과는 달리 別居의 形態도 보이는데 C사례와 같이 남편이 일본으로 건너감으로써 생긴 특이한 예이다. 과거 本島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在日同胞가 상당히 많은데 4·3事件 當時 폭도들의 만행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가난 극복을 위해 돈벌이 나간 것이 그곳에 定着하게 된 것이다.

配偶者와의 死別·離婚 및 別居 當時 本人의 연령을 보면 여자가구주는 50세 미만의 경우도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나, 男性은 전부 50세 이상이다. 젊어서 配偶者와 이별했을 때, 男性은 거의 再婚하는 것 같다. 男性으로서 再婚 可能性이 있어 보이는 50代가 2사례 있었는데, 經濟的 無能 또는 정신박약이라는 어려운 要件이 있었기 때문이다. 女性은 再婚 可能性이 있는 40代 까지를 보면 대부분 初婚을 유지하고 있다. 男性에 비해 女性이 보다 더 男便과 이별後 再婚의 길을 걷지 않고, 자식들을 돌보며 혼자 生活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家門을 지킨다는 儒敎의 生活原理에 입각해서라기 보다, 여성들의 生活力 및 自立性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一人家族들이 홀로 된 후의 생활기간을 보더라도 남자가구주는 10년 미만으로, 고령이거나 再婚할 처지에 있질 못했다. 반대로 여자가구주는 10년 이상이 대다수로서, 一人家族의 대부분이 女性이라는 점과 同質로 理解된다.

4. 結婚關係

〈표 4〉 결혼 경력

	H 부락	S 부락 ¹⁹⁾
초 혼	45(75.0)	8(50.0)
초혼의 이혼 상태	—	2(12.5)
재 혼 이 상	15(25.0)	6(37.5)
계	60(100.0)	16(100.0)

위 表에서 특이한 것은 양지역 모두 미혼자가 전혀 없이 既婚者라는 점이다. 그러나, 1975년도 육지 도시지역과 서울은 미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²⁰⁾ 대조를 보인다.

H부락은 初婚者가 절대다수로 나타났다. 男便의 일본 定着으로 인한 別居는 初婚의 상태로 보았고, 再婚 이상의 경험자 중에는 妾의 경우도 포함시켰다. “濟州島에서는 陸地와 같은 本妻와 妾間에 身分의·社會的 차이가 별로 없으며 妾이 되는 것을 일종의 再婚으로 의식”²¹⁾ 하기 때문이다.

18) 上揭書, p. 185.

19) 上揭書, p. 64.

20) 崔在錫(1982), 前揭書, p. 36.

21) 崔在錫(1979), 前揭書, p. 177.

S부락에서 보이는 初婚의 離婚狀態 2사례는 “독신으로 있는 젊은 여자는 조만간 再婚할 것으로 추정”²²⁾ 된다고 함으로써 양지역 모두 初婚의 실패로 이혼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再婚하는 경향이 다.

初婚이 해체된 자가 S부락은 절반이 되고 있고, H부락은 ¼에 해당되고 있다. 정확한 比較資料가 없어 단정 짓기는 곤란하나, 一人家族 中の 초혼 해체율은 S부락뿐만 아니라 H부락도 陸地 傳統家族의 觀念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높다.

D사례와 같이 복잡한 結婚經歷도 있으며, E의 例처럼 단순히 男便이 마음에 들지 않아 女性이 結婚生活을 기피한 경우도 있어 本島의 妾制度와 離·再婚率의 높은 일면을 짐작케 한다.

5. 財産所有 狀態 및 生活手段

家屋이나 土地의 一部만 상속하고, 일부는 남겨두어 자신이 生活하고 管理하는 경우가 27家族 (45.0%)이나 된다. F사례와 같이 年老해지면서 能力이 부쳐 財産의 어느 정도는 상속해 주었지만, 아직도 本人의 勞動力이 있는 한 생계를 위해 일부를 所有하는 것이다. 名義變更 된 후라도 管理權이 있는 경우는 25家族(41.7%)인데 대부분 고령자들이 노동력이 약할 때, 기거하는 家屋만 管理하는 것이다.

財産이 없을 때 日本의 親戚·親庭母의 財産을 댓가없이 관리하면서 生活하기도 하고, 그나마도 의지할 데 없어 남의 집이나 밭을 빌어서 생계를 잇는 경우도 있다.

절반 이상은 스스로 經濟問題를 解決하는데, 韓昌榮도 自身의 經濟解決이 50.1%²³⁾라고 밝힌 바 있다. 평균연령으로 볼 때 상당히 年老한 者도 勞働에 의해 獨立生活을 한다. 自作을 하든가, 남의 밭을 빌어서 半作(半作) 또는 품팔이로 生活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식들의 經濟能力과는 상관없는 경우도 많다. 특히 女性들은 더욱, 勞動力이 있는 한 獨立해야 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노동을 중시하는 듯하다. 그리하여 맑은 날은 보통 밭에 나가 일을 한다. 고령이어서 노동력이 약해지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끼리 동네어귀에 모여앉아 담소로 외로움을 달래든가, 동네 잔치집 마늘까는 일 등을 거들면서 대화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들에게 현재 가장 고통스럽거나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難聽· 신경통 등 육체적인 괴로움을 호소한 예가 많다. 경제빈곤에 대한 걱정이 적는데, 서울 노인세대(결혼가정)의 경우는 경제문제가 가장 높아²⁴⁾ 대조적이다. 本島의 경우 강한 自立意識으로 最小限의 生活에 대한 대비와, 經濟的 貧困에 대한 인내심으로 건강문제가 더욱 크게 대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로움을 하소연하거나, 자식에 관한 걱정을 앞세우는 경우도 적다. 철저한 分家意識은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약하게 하고, 나아가 個人中心의 生活原理를 뿌리내리도록 야기시킨 결과로 보인다.

22) 上揭書, p. 65.

23) 韓昌榮, 前揭書, p. 111.

24) 이숙중, 「노인세대(결혼가정) 조사 보고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76, p. 30.

6. 子息의 有無 및 居處位置

딸만 있는 4家族(6.7%), 아들이 본래 없거나 早死하여 養子를 취한 3家族(5.0%)을 제외하면 모두 아들 1명 이상을 두고 있다. 아들이 없어 F사례와 같이 妾을 데려 아들을 얻거나, 入養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딸만 있는 4家族은 養子를 원하나 財産이 없어 實現되지 않고 있다. 養子에게 적어도 忌祭祀를 지낼 수 있을 정도의 財産은 상속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能力이 없는 것이다. 妾을 얻어서까지 아들을 얻거나, 養子를 희망하는 것은 父系繼承 意識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扶養 意識에 있어서 반드시 長男이어야 한다는 原則이 강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趙惠貞의 “유교적 영향은 선택적”²⁵⁾이라는 지적을 注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子息들의 居處位置는, A·D사례와 같이 동일울타리내에 居住하는 10사례 모두 안거리에 子家族이 生活하고 있다. 87세의 남자가구주가 동일울타리가 아닌 바로 옆집에 起居하면서 炊事分離 하는 사례를 비롯 같은 부락내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25사례이다. 동일부락내에 자식이 居住하지 않는 경우도 절반이상으로, 年老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依支할 子女없이 지낸다는 것도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7. 子息들과의 生活關係

B·D사례와 같이 자식에게서 일체의 經濟援助를 받기도 하나 절반 이상은 經濟的 自立을 하고 있다.

자식들의 왕래나 의논, 선물조차 없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 점은 姑婦關係에 있어서, 媳母의 생신에 대한 반응형태가 알고는 있으나 모른척 한다든가, 전혀 알지조차 못함이 다수였음²⁶⁾을 상기한다면, 같은 현상으로 보인다.

家事의 協助程度에 있어서도, A사례와 같이 빨래를 다소 돕는다든가 하는 경우는 11家族(18.3%) 뿐이다. 동일부락내에 子息이 居住하는 경우가 25家族(41.7%)이고 80세 이상인 자도 22사례(36.7%)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다. 특히 거동이 가능한 여자가구주는 더욱 도움을 청하지도 않거니와, 자식들의 입장에서 社會的 慣習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子息들에게서 상당히 존경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32家族(53.3%)이나, 관심의 대상에서 疎外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25사례(41.7%)에 이르고 있다. 귀찮은 存在로 취급받는 것 같으며, 장수하는 것도 남부끄러운 일이니 어서 죽어졌으면 좋겠다는 경우도 3사례(5.0%) 있다.

本島 家族의 오랜 生活慣習의 일면으로서 經濟 측면만이 아니라 心理的인 면에서도 獨立된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철저히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것일 뿐이지, 子息들의 무관심한 것 같은 행위가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고는 父世代나, 부락사회에서나 여

25) 趙惠貞, 前揭論文, p. 163.

26) 金惠淑, 前揭論文, p. 134.

기지 않는다. 오히려 生日을 크게 차린다든지, 선물을 자주 하는 것은 여유있는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기는 性向마저도 엇보인다.

8. 將來 同居 希望 與否

1인 가구주인 本人들의 同居 希望은 3사례 뿐이다. 이들 중 88세의 여가구주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子息들의 무관심에 의해, 또 77세의 여가구주는 아들 둘이 서울과 부산에 居住하므로 陸地에 가고 싶지 않아서, 58세의 남자가구주는 炊事가 힘드나 子息이 扶養할 立場이 아니되기 때문으로 나타나 있다.

혼자 살기에 불편을 느끼는 5남자가구주 중 4명이 獨立을 希望하여 本島民의 分家意識 내지 獨立性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本人들의 意志와 관계없이 現在 子息들이 扶養할 형편 여부를 살펴보면 아들이 없든가 사망, 經濟能力 미약, 島外居住 등의 18家族(30.0%)은 合家의 能力이 없어 보인다. 그 이외의 家族은 子息들이 同居를 원하나 本人들이 獨立하고 있다.

9. 附加戶 制度의 惠澤

老夫婦 家族 또는 年老한 一人家族의 경우, 보통 經濟的인 여유가 없거나 또한 마을 자체내의 노력봉사에 있어 勞動力을 提供할 수 없는 家族이 發生하게 되는데 이들의 生活을 保護해 주기 위한 것이 附加戶 制度이다. 이는 부락사회의 自生的 制度인데, 주로 賦役과 里稅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附加戶 制度의 惠澤 여부는 子家族과 동일울타리내에서 居住하는 E사례와 같은 10家族은 제외되었다. 里長을 중심으로 惠澤 대상자를 決定할 때 앞의 家族의 類型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부락사회에서는 家族의 單位를 經濟面이 아닌 하나의 울타리를, 즉 住居 中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일울타리내에 父世代와 子世代가 生活할 때 經濟的인 分離로, 실제로는 2家族을 形成하고 있음에도 經

〈표 5〉 부가호 제도 혜택

이세·부역 면제	18(36.0)
이무비 반액 면제	1(2.0)
이무비 반액·부역면제	1(2.0)
부역면제	14(28.0)
이무비·부역면제, 국민배급	3(6.0)
전혀 혜택 없음	13(26.0)
계	50(100.0)

濟力·勞動力에 관계없이 賦役 및 里稅는 1家族으로만 취급되어 賦課되고 있다는 것이다. 經濟力·勞動力이 있는 子世代가 對外權을 행사하여 賦役·里稅를 감당하는 것으로서, 밖거리의 父世代를 獨立된 家族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父世代에게 附加戶 制度의 惠澤을 준다는 觀點과는 다르다.

H부락에서는 里稅를 里務費 또는 里政稅라고 부른다. 一入家族중 賦役 및 里稅를 모두 免除받고 있는 경우는 B·F사례등 18家族으로서 연령은 58세부터 88세에 까지 이르고 있다. 賦役 免除는 안 되고 里稅를 반액 惠澤받고 있는 경우는 단 1사례로서 財産이 전혀 없고 품삯으로 生活하는 58세의 남자가구주이다. 반대로 賦役은 免除받으면서 里稅는 반액 免除받는 경우는 1사례인데 72세의 여자가구주이다. E사례와 같이 里稅는 負擔하나 賦役은 免除받는 경우는 14家族으로서 70세에서 80세의 分布를 보인다. 里稅·賦役의 惠澤뿐만 아니라 국민배급²⁷⁾까지 받는 3사례가 있는데 74, 75, 87세의 여자가구주이다. 附加戶 惠澤이 전혀 없는 경우는 C사례와 같은 13家族으로 모두 70세 이하이다.

賦役 免除는 남·녀 모두 70세 이상일 때 해당되고 있으며, 里稅는 80代の 高령자도 제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연령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經濟能力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동부지역 S부락에서는 附加戶 制度가 두 종류로서 하나는 賦役과 里稅를 함께 免除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賦役만 免除해 주는 것이다. 또한 賦役만 免除받는 附加戶는 17세 이상의 同居子女가 없는 65세 이상의 남자가구나 60세 이상의 여자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²⁸⁾고 하였다.

그러나 H부락에는 里稅만 반액 또는 里稅 반액·賦役 免除의 形態도 있고, 대상이 남·녀 모두 70세 이상이라는 점에 差異가 있다. 附加戶 制度가 行政的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部落內의 自生的인 社會福祉 制度이기 때문에 부락마다 적용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差異點은 S부락에서는 附加戶 制度의 惠澤을 받는 家族 中에 賦役과 里稅를 모두 免除받고 있는 12家族 中에서 1사례가, 賦役만 免除받고 있는 11사례 中 1사례가 동일올타리내에서 子家族과 炊事分離 生活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⁹⁾ 이러한 差異點은 서부의 H부락과는 달리 부락사회에서도 동일올타리 여부가 아닌 炊事分離를 單位로 賦役·里稅가 부과되어 지는 데서 기인하거나, 두 調查 모두 經濟面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附加戶의 惠澤 與否를 보는 視覺에서 筆者는 동일올타리를 한 家族으로 하는 부락사회의 기준에 따라 살핀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結 論

서부지역의 H部落을 대상으로 調查한 一入家族의 性格 및 生活에 대한 分析 結果를 土臺로 抽出해 낼 수 있는 점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를 제외하면 높은 울의 一入家族을 포함한 夫婦家族 形態를 이루고 있어 核家族의 傳統이 유

27) 국가에서 지급 되는것임. 月 7,000원과 보리·쌀 12ℓ

28) 崔在錫(1979), 前揭書, p. 85.

29) 上揭書, pp. 87~90.

지되고 있다. 이러한 家族形態는 産業化·都市化 현상과 더불어 앞으로 本島 農村의 一人家族을 상당기간 동안 지속해 나가게 할 것으로 展望된다. 50代 이상에서는 과거 4·3사건의 影響이 있고, 長男도 分家하는 獨立性이 오랜 生活慣習이 되었으며, 拘束을 싫어하는 自由에의 意志, 家 보다는 個人中心의 思考를 갖게하는 核家族 構成, 젊은 세대의 都市 集中 등의 要素가 作用하는 것으로 보인다.

一人家族은 대부분 年老하여 家族週期別로 불매 隱退期에 처해 있으며, 構成上으로는 一人家族과 一人家口가 일치하고 있어 一人家族속에 전혀 非血緣 家口員의 흔적이 없다. 經濟的인 餘力이 없으므로 고용인을 둘 수 없다는 점, 勤勉性, 獨立性 및 家族形態 등에서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未婚인 자는 전혀없고 再婚 이상의 結婚 經驗者도 비교적 많으며, 女性이 먼저 結婚을 清算하는 경우마저 있다. 女性들이 經濟的으로 自立이 可能한 생활여건에서 나오는 강한 生活力 및 自主的 特性을 가늠해 볼 수 있다. 財産이 있는 경우 勞動力이 喪失되어지는 程度에 따라 相續이 이루어지며, 微力이나마 勞動力이 남아 있을 때는 自身의 最低生活를 保障할 수 있을 만큼의 財産은 남겨둔다. 그래서 年老하더라도 가능한 한 經濟的 自立을 하며, 勞動力이 떨어지면 子息의 援助를 받더라도 炊事는 고집하여 分離한다. 炊事마저 어려워지면 子家族에게 合家하는, 쓰러지기 직전에야 依存할 정도의 강한 經濟的·精神的 獨立性의 意志를 보여준다.

子息의 扶養을 받을 때 長男 우선 意識이 存在하지만, 반드시 長男이라야만 된다는 原則이 強하지는 않다.

이러한 오래된 社會的 慣習은 한편으로는 老後에 가서도 子息들과의 經濟的·情緒的 紐帶關係가 깊지 못한 逆機能의 현상을 招來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解決策의 한 方便으로 등장한 것이 附加戶 制度이며, 本島民의 「좋은 인심」도 年老者 一人家族의 生活를 가능하게 해주는 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特徵들은 동부 S부락과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나, H부락에 一人家族이 월등히 많다. S부락은 初婚 解體時 再婚의 경향이 보다더 높은데서 오는 差異點으로 파악된다. S부락 一人家族에 있어 재혼율이 높은 것은 동부지역이 서부에 비해 儒敎의 原理에 의한 支配를 보다 덜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疑問을 품을 수 있지만, 本 調査만으로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이는 추후 서부지역의 離·再婚 및 妾制度 등을 研究함으로써 比較가 可能해 지리라 본다.

陸地部の 農村, 中小都市 및 서울과는 아주 다른 樣相이어서 本島 一人家族의 特性은 陸地 傳統 家族의 觀念이나 시각과는 懸隔한 差異點이 많이 드러난다.

一人家族의 대부분은 自身의 處地에 대해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自然의 順理로 받아들이고 있다. 獨立性은 子息에 대한 기대치가 약하게 되므로 子女들과의 葛藤이 심하지 않으며, 여유없는 生活에 대한 悲觀도 적다. 즉, 외로운 것이 사실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인간의 老衰와 더불어 으레 찾아오는 단계로 받아들이는 肯定的 자세인 편이다.

그러나 70~80代의 老人들이 손수 마련하는 食事와 세탁, 잠자리 등의 實狀은 悲慘할 정도이다. 설령 本人들은 意識하지 못하거나, 問題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社會가 關心을 가져야 하고 짊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一人家族에 대한 行政的인 次元에서의 福祉對策이 要求되며, 家族形態는 그대로 維持해 나가더라도 좀더 溫情에 바탕을 둔 人間다운 生活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젊은 子息世代의 觀心과 行動이 必要하다.

Summary

A Study on a Single Family in Cheju Island

Kim Hye-sook

This survey, covering 60 single families out of 176 families of a western village in Cheju Island, was mainly conducted as a case study during July and August in 1984. And unsatisfactory details in the course of analysis were supplemented by several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single family members for nearly a year.

The results required are as follows;

A majority families are conjugal ones based on single families, so traditional nuclear family system still exist.

Most of the families are old and consist of a single household, that does not include their relatives. This is because of their economical poverty, diligence and independence of the family members under the system of nuclear family.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are none of unmarried patriarchs or matriarchs in a single family and there are also some remarried patriarchs and matriarchs.

As their ages become old, even when they have enough property and labor ability, they do not give away all the property to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they leave some property enough to live on. When old, instead of depending on their sons, they want to live independently. On the other hand, when they become old enough and have no money to live on, they depend on their sons. Most parents want to live with their first son, but some of them do not mind depending on any other son. This old-aged traditional custom results in economical and affectional dissatisfaction. A solution for this problem is *Pugaho* system in the community as a autogenous welfare system.

The characteristics mentioned above comparatively have in common with those of a eastern village in Cheju Island, but they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regions in the main-land and Seoul.

Because of independence, psychological conflict is not serious between the old-aged parents and their son's family, but in their late 70s-80s, their livings are miserable, considering the living conditions of rural districts in Cheju Island. Therefore political considerations as a welfare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ons and daughters have and interest in their comfortable living.